

한국의 가족계획정책은 가족주의를 어떻게 활용하였나*

오영란**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그것은, 가족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그 실체적 의미를 밝혀가는 것과, 그 과정을 가족계획이라는 실제적 정책사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점이다. 가족주의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사회문화의 토대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용어이지만 그 개념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계획이라는 실제적인 정책사례를 통해 그 전개 과정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가족계획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그 성과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계획정책을 대상으로 가족주의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징과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정상가족이데올로기, 권위주의체제, 그리고 성차별문화라는 3가지 특성과 가족주의가 결합됨으로서 실제로 가족주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결합은 가족계획이 자녀수줄이기를 통해 소자녀가족만들기에 집중하여 정상적 가족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둘째, 발전주의적 권위주의체제와의 결합은 강력한 실행력과 규제력을 통해 가족주의를 통치원리로 활용, 복지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그리고 마을단위의 집단적 규범으로 실행되도록 하였다. 셋째, 성차별문화와 가족주의의 결합은 남아선호의 전통관습과의 충돌속에서 여성의 가족구속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또한 그 실천방식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요어: 가족계획, 가족주의, 정상가족이데올로기, 출산통제, 사회문화적 특성

*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케어와 공생 국제심포지움(2019.12.15. Kyoto, Japan)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ohyr21@gntech.ac.kr)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가족계획정책에 있어 가족주의의 이념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에 있다. 여기에는 3가지의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가족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그 실제적 의미를 밝혀가는 것과 그 과정을 가족계획이라는 실제적 정책사례를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가족주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사회문화적 토대라는 관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예를 들면, 손승영, 2011; 落合惠美子, 2013), 그러나 그 개념이나 실제 정책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많은 연구에서 가족주의의 개념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가족주의의 이념적 개념 구분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가족중심주의 도구적 기능적 가족주의 등 주로 담론으로서 그 개념을 살펴보는 경향으로(박통희, 2004; 이승환, 2004; 손승영, 2006), 실제적인 정책에의 적용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서 가족주의는 복지레짐의 한 축으로서 등장할 만큼 실제적으로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나 정책 속에서 사용되는 가족주의의 실제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논의 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회복지와 가족주의 적용에서 국가복지의 대리로서 복지대응의 책임을 가족에게 부담시키고 국가책임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가족책임주의를 논의한 연구들에서 드물게 볼 수 있다(예를 들면, 박광준,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주의에 대한 담론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 현실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사회정책의 사례 속에서” 적용과 분석을 통해 가족주의의 실제적 모습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한국의 가족계획은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요인과 추진동력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가족계획은 서구국가들이 백여 년의 시간을 통해 축적해왔던 인구변화의 성과를 약 3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급속한 변화, 즉 출산력 감소, 인구억제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는 가족계획어머니회를 비롯한 일선 현장활동 등을 포함한 전국적 계몽활동이 조직적으로 추진력 있게 전개된 다양한 과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무엇인가, 빠른 변화를 가져온 추진동력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가족주의 이념이 집단적 규범으로서 또는 정책의 원리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토대하여 가족계획정책의 전개 과정에는 가족주의 이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었는가를 좀 더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계획의 선행연구들은 학문적, 또는 정책과정과 내용, 주체별로도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

어져 왔다. 가족계획의 전개와 성과,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연구(고영복, 김대환, 1972; 이해영, 김진균, 1972; 양재모, 1986; 홍문식, 1988)와 함께 가족계획과 관련되는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윤종주, 1967, 1971; 박충선, 1999)들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가족계획의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박광명, 2017), 출산의 주체인 여성적 관점(이미경, 1989; 배은경, 2005; 윤정란, 2008)이나 국가 비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이선이, 2007)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족주의와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김홍주(2002)는 가족계획정책이 국가에 의한 가족동원의 대표적 형태로 보고 출산조절을 통해 가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근대가족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가족정치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최근 조은주(2018)의 연구는 <가족과 통치>라는 저서를 통해 가족계획이 정치적 통치의 도구로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계획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 이들 연구는 직접적인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계획 속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어, 참고될 수 있는 연구라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계획에서의 가족주의의 관여, 예를 들면 집단적 계몽 활동을 통하여 작은 마을 단위 및 개인과 가족에게 침투되는 가족주의의 활용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가족계획의 비교적 관점을 위한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가족계획은 아시아국가의 빈곤해소 및 경제개발지원을 위해 국제사회로부터의 필요조건으로서 요구되어지고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며, 이는 유사한 정책이 아시아 각국으로 도입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정책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그 전개 과정에서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그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주의와 사회문화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한 국가간 비교관점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 선행작업으로서 먼저 한국적 상황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결론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가족주의란 무엇인가: 개념과 유형

세계 4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ave 2005-2007)에 따르면 조사참가자의 90.4%가 '가족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가족주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생활에 있어 개인보다는 가족을 우선으로 하면서 중심에 두

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가족주의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문화의 하나로서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Mucchi-Faina, 2010:365).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에서 사회적 제 현상을 설명할 때 더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서, “정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강한 가족주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유럽지역의 연구에서도 가족주의의 문화적 가치 등을 비교할 때 동아시아의 문화적 배경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예를 들면, Campos et al, 2016; Mucchi-Faina, 2010; Daatland and Herlofon., 2003)가 많아, 가족주의의 강력함이 특징적인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주의의 개념 및 특성 등과 관련되는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에서는 가족주의에 대해 그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가족주의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논의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Sabogal과 그 동료들(Sabogal et al., 1987)은 히스패닉계 가족주의를 탐구하면서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그것은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제공받을 것이라는 가족의 의무와 기대, 그리고 가족의 가치와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준거로서의 가족이다. 또한, Steidel & Contreras(2003)도 가족주의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정의를 제안하면서, 가족의 욕구와 필요성을 방해하는 개인의 욕구와 필요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신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일을 하는 강한 결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 필요시의 상호호혜와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행동양식의 유지를 들었다(Mucchi-Faina, 2010:366에서 인용). 즉 개인의 가족에 대한 의무와 관련 행위들이 가족중심으로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의 가족주의 개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승환(2004)의 논의에서 손인수(1984)의 개인보다 가족을 우위에 두고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태도나, 배광용(1984)의 모든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 존속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사회조직의 형태라는 개념은 가족을 우선시하고 중시하는 태도에 초점을 둔다고 하였다. 즉, 이는 가족주의가 서구의 개인주의와 상대되는 것으로, 개인주의가 개인의 주체적 결정이 행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하여 개인보다는 집단으로서의 가족이 주요행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가족중심성, 가족우선성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또한, 박통희(2004)는 가족주의가 가족결속력, 가족우선성을 말하면서 이것이 가족이 아닌 다른 집단으로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속에는 앞서 살펴본 서구의 가족주의와 달리, 가족이라는 집단적 특성이 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확장하여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족주의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동질적 측면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다층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한국의 가족주의의 개념적 특징과도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즉, 한국에서의 가족주의는 가족중심의 집단적 행위 우선이 가족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나타나는 가족주의의 의미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유사가족주의에 관한 논의이다. 이승환(2004)은 가족주의에 대해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요시 여기며 가족적 인간관계, 즉, 가족 안에서 통용되는 원리를 가족 외의 사회관계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태도로 정의하면서 이를 '의제가족주의'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기업, 사회의 3가지 영역으로 확장하여, 국가에 대한 가족주의 적용은 정치적 지배자의 특권적 지위와 이에 따르는 국민의 무제한적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강력한 통치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것이며, 기업의 경우는 노동자의 헌신으로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영가족주의, 그리고 사회에서의 가족주의는 사회관계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원칙이 가족으로 대체되어 나타나는 연고주의로 보아(이승환, 2004:51-52), 가족주의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될 때의 다양한 분화로서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가족책임주의이다. 가족책임주의는 그 역사적 기원으로 서 조선시대의 가족부양책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광준(2018)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의식 강조와 부양의 인센티브, 동시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과 기근 등의 특정 상황에서의 가족부양의무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행되어¹⁾ 가족 간 공생의 강제, 가족 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가족책임의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가족책임주의는 오늘날 그 연장선에서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맡기고 그 대처능력의 결함이 증명될 때에만 국가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朴光駿, 2017:57). 셋째, 장경섭 외(2015)가 분류한 제도적 가족주의는 가족적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가족중심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국가의 제도가 형성,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치, 경제, 고용, 교육 등 사회 주요제도가 가족을 단위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기도 하다(장경섭 외, 2015:6). 국가의 공식적 정책 및 제도를 통해 가족보호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가족 스스로 보호하도록 제도에서 강조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에서 자주 지적되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가족이 제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가족책임주의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넷째, 도구적 가족주의 또한 한국사회가 경험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개발주의적 경제성장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가족만이 개인을 보호하는 방어막이자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서 도구적으로 활용되어왔던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를 개념화한 것으로(박통희, 2004; 손승영, 2006; 백진아, 2007; 권용혁, 2011), 이러한 도구적 가족주의에는 국가 정책이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가족을 통해 개별구성원의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방임하였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²⁾

1) 부모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병이 있으면 군역을 면제하고 지방직 관리의 임명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관직에 있으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 파직시키는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다(박광준, 2018:463-464)

2) 여기에 대해 손승영(2006)은 한국에서의 가족주의가 도구적 가족주의로 설명되는 것에는 산업화 자본주의화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한 가족주의의 논의 속에서, 그렇다면 한국의 가족주의는 어떤 특성과 의미로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가족중심의 태도와 가치가 사회적 제도, 정책의 운영원리로서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특징을 가진 점, 그리고 이것이 가족책임주의, 유사가족주의로 나타나는 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전자는 가족주의 개념이 보다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가족주의를 논의한 박광준(2018)의 연구에서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가족의 돌봄 관련 현금지원제도 등이 실행되는 것으로 미루어 가족 가치가 한국에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선시대의 특이했던 점으로 가족부양의 대표적 가치인 효를 가족윤리의 차원을 넘어 사회질서의 원리로 삼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박광준, 2018:454), 이를 통해 보더라도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가족주의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후자의 가족책임주의, 유사가족주의는 가족주의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나타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족책임주의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가족주의를 관통하는 특성으로, 가족단위의 책임, 가족 성원 중 누군가가 책임진다는 것의 두가지 스펙트럼으로 구체화 될 수 있지만 이의 대부분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구조 안에서 성별 분리에 기반한 돌봄부담의 문제로 드러난다. 즉 여성에게 부여된 가족돌봄 부담의 문제에 주목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가족계획정책에서의 여성의 가족돌봄 부담의 문제는 가족의 재생산과정에서 여성의 책임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해볼 수 있다. 또한, 유사가족주의는 이러한 가족책임이 어떻게 정책 제도를 통한 운영원리로 적용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정리된 가족주의의 특징적 의미를 보다 실제적인 정책 경험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업적은 가족주의의 의미를 다양한 개념화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고 또한 이를 통해 가족주의의 개념화는 동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논의의 축적에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가족주의가 정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등을 밝히는 정책사례에까지는 확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반영하여 실제적 정책 경험 속에서 가족주의의 구체적 활용을 분석할 것이다. 실제 이것은 매우 주요한 작업으로, 왜냐하면, 가족주의는 단순한 정책이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정책이나 사회서비스 전반에 있어 그 운영원리로서 또는 정책기법으로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가족주의가 이념적 차원에서의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실체를 가지고 드러나는 측면에 대해 그것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

과정에서 가족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민공동체나 국가기능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를 정책 차원이 아닌 가족우선의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 유지되어왔던 것에 기인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손승영, 2006:253)

2) 가족주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1) 가족주의와 사회문화적 특성과의 결합

Valenzuela and Dornbusch(1994)는 가족주의란 가치 태도 및 규범의 측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복합적 구조물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가족주의가 해당 사회에서의 규범과 가치, 문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임을 말한다. 즉, 그 사회의 의식과 태도, 체제와 규범, 문화 속에서 가족주의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송재룡(2002)의 해석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지배적 특성과 가족주의의 관계는 사회의 조직원리나 윤리 지향성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지평이나 틀로 작용함으로써 일상의 의식과 행위를 구속하는 일종의 문화적 습속(habit of heart)으로 보았다(송재룡, 2002:3-4).³⁾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가족주의는 실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대답에는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족주의는 그 자체로 특정한 실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따라서 가족주의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제도나 시스템과 관련지어 논의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朴光駿, 2017). 이는 다시 말하면, 가족주의는 그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의식과 규범, 문화 속에 존재하여, 가족주의의 실제적 모습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체제, 시스템 등과의 연관성의 고려, 즉 사회문화적 특성과의 결속을 고려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국가의 가족주의를 고찰한 朴光駿(2012, 2017)의 연구는 유효하다 할 수 있는데,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피부양자범위 설정에 대해 권위주의적 정부와 강하게 결속된 가족주의적 접근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되었던 정책사례를 밝히고 있다.⁴⁾ 이는 가족주의가 어떤 정치 사회적 특성과 결합될 때 나타나는 가족주의의 패턴으로, 가족주의의 실제적 형태를 가시화시키는 것이며, 또한 사회정책에서의 가족주의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가족주의 접근 관점을 풍부하게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인식하는 가족주의와 사회문화적 특성과의 관련성에 토대한 이론적 관점을 원용하여 가족계획정책에서 가족주의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어떻게 결합되며 이를 통해 어떻게 가시화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계획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하의 절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3) 송재룡(2002)의 해석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지배적 특성과 가족주의의 관계는 마음의 습속(habit of heart)과 같은 속성을 가져 사회의 조직원리나 윤리 지향성의 바탕이 되며 사회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지평이나 틀로 작용하여 일상의 의식과 행위를 구속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송재룡, 2002:3-4)

4) 권위주의 외에도 발전주의, 강한가족을 들고 있다(朴光駿, 2012).

(2) 가족계획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배경

① 성차별적 가부장제 가족과 근대가족

가족계획과 관련한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의 특성으로, 성차별문화 속에서의 가족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정치사회적 특성을 들 수 있다. 먼저 성차별문화 속에서 한국사회의 가족변천과 관련한 특성을 살펴보면,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과 근대가족이다. 첫 번째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은 오랫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가족을 지배해 온 규범적 총체로서,⁵⁾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남성가장권을 중심으로 가족중심, 성별분리,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백진아, 2009:209). 가부장제 가족은 여성들에게 성별 분리에 기반하면서 모성의 강요와 가족에 대한 헌신이 가족 규범이라는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를 모성과 사랑으로 미화되는 전형적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면에 내포된 여성 억압적 요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가족계획의 전개 과정에서도 출산을 둘러싼 여성의 자기헌신과 가족규범에서 이러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둘째, 근대가족은 192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통해 대두되어⁶⁾ 기존의 전통적 직계가족에 대한 문명론적 비판과 함께 새로운 가족개념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기존의 가족은 가족갈등을 일으키고 개성의 발전을 억압하여 사회발전과 개인의 자립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대비되어 근대가족은 혁신적인 가정개량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소가족이 강조되었다(김혜경, 정진성, 2001:220-221). 이때의 가족중심은 부모 자녀가 아닌 부부가 되며, 이것의 실제적 핵심은 여성의 역할이었다. 부부관계는 남녀가 평등한 것이 아닌 근대적 교양을 가지면서도 그림자와 같이 남편을 내조하는 현모양처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김혜경, 정진성, 2001:223), 여성의 주부화와 공사 및 성별분리를 특징으로 하였다(전미경, 2012). 즉 근대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기반으로 하여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부부관계를 언급하지만, 남성의 공적 영역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여성의 전업주부화로 가정 내 사적 노동에 전념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근대가족은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도 이루어졌다(예를 들면, 최재석, 1982; 강이수, 1999; 박경숙, 2017).⁷⁾ 결국, 근대가족은 내용적으로는 가부장적 가족의

5) 瀨地山角(1994)은 동아시아의 가부장제를 통해 가부장제는 성과 세대에 기초하여 권력이 불균등하게 그리고 역할이 고정적으로 배분된 관계와 규범의 총체로 보았다.

6) 이에 대해 김경일(2012)은 일본에서 근대가족이 일본의 전통과 서구의 영향이라는 이중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서구 일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쇄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전통과 서구에서 기원하여 일본의 프리즘을 거친 다양한 개념과 실천들이 혼합되어 이루어지는 과정을 수반한다고 하였다(김경일, 2012:159).

7) 예를 들면, 한국 근대가족의 특성이며 가장 논쟁적인 것은 전통적 가족관계와 근대가족 관계와의 구분이라고 지적한 연구(박경숙, 2017), 근대가족은 가부장적 관습이 더욱 강화되어 가는 것으로 변형되어온 호주제도를

모습이 내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논의는 실제 가족계획정책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가부장적 전통과 충돌하는 근대가족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전통적 가부장가족과 근대가족 등 가족변천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논의가 가족의 다양성을 차단하는 문제이다. 전통적 가부장가족이나 근대가족에서 형상화하는 가족은 성별 분리에 따른 부부의 기능적 역할의 중요성이 보여지는 가족 형태에 대한 일종의 바람직한 모습이 있게 된다. 즉 가장 규범적이면서 정상적 가족이라는 특정한 가족 형태를 구조화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은 반드시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나 가정 내 머물면서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모습의 권장, 그 외에도 동아시아에서의 노인동거 가족에 대해 이상적 가족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사실혼가족이나 부모의 결혼형태에 따른 아동의 차별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朴光駿, 2017), 낙인 부여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바람직한 가족상을 구현해나간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의 전통적 혈연중심의 제도적 가족을 전형으로 하면서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쳐오는 동안 더욱 강조되어진 근대 핵가족이 가장 “정상적인 가족”으로서,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체험을 통해 문화적 관습으로 재생산되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손승영, 2006:246)을 가지며 동시에, 그렇지 않은 미혼모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등은 소위 ‘결핍된 가족’, ‘비정상적 가족’이라는 규범으로 확대되어 차별과 시혜적 보호를 동시에 받게 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서 미혼모 자녀의 해외입양을 들 수 있다. 권희정(2015)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개발계획 초기인 1960년대 해외입양 아동은 2500여 명이었던가 1980년대에는 92000여 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같은 기간 미혼모 자녀의 해외입양 비중도 290여 명에서 67000여 명으로 급증하여 실제 해외입양 아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제도적 결혼을 통한 출산만이 정상적인 출산이라는 사회 규범 속에서 미혼모의 출산은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지적하였다. 이 같은 과정은 미혼모는 모성에서 배제하고 그 자녀는 입양을 통해 다른 정상가족의 범위에 포섭시키려고 하는 방식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화된 가족 형태에 대한 구현은 가족계획에서 그 실제적 모습을 볼 수 있다.

② 권위주의와 발전주의

가족계획정책과 관련한 한국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권위주의와 발전주의의 혼합적 성격을 볼 수 있다. 이해경(2006)에 의하면, 1961년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한국에 대해 존슨(Johnson, 1988)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또는 자본주의발전국가로 명명한 바 있으며, 또

도입함으로써 가부장제와의 접점을 이루었다고 말하였다(강이수, 1999:118-121). 또한, 한국 가족의 변천을 연구한 최재석(1982)의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가족은 유교적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미미한 근대로 파악해 왔다(최재석, 1982:237-246).

한 1990년대 초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이후 동아시아의 복지국가 성격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의 복지체제를 발전주의적 복지체제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었다(정무권, 2002). 두 논의 모두 한국의 복지국가 체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으로, 이 논의들에서 말하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공통적 특성으로는, 국가가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경제개발전략을 우선으로 하고 자본의 직접적 동원과 배당, 그리고 이에 필요한 인력이나 조직, 즉 핵심노동자 또는 노동자 조직을 통제하는데 지배적 역할을 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것은 일찍이 1960년대 이후 이루어진 다수의 복지관련 법의 제정이 당시 정권의 정당성 창출을 위한 선언적인 것이 되었고 경제개발중심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의 기초를 유지해왔던 당시의 체제 성격을 말해주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논의는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의 한국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논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시의 한국적 체제특성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 적어도 경제발전중심주의와 1960년대 초반 이후의 권위주의 정부의 집권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는 가족계획정책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시간적 동시성을 가지며, 이 시기의 최선의 복지는 경제성장이며 최선의 사회안전망은 가족이라는 사고가 널리 확산되는 과정(이혜경, 2006:29)에서, 또한 권위주의적 체제가 정책목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튀이젠더, 2012:94)에서 가족계획정책의 전개는 이러한 체제 성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 가족계획정책의 도입이 경제개발과 무관하지 않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에서는 경제전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점, 또한 발전국가의 특성이 국가운영에 필요한 특수집단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것이나 가족 의존성의 강조라는 점(정무권, 2002:441) 등을 고려할 때 가족계획에서 나타난 정책대상의 문제는 이러한 특성에 의해 실행의 가속화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에 기반하여 가족계획정책을 대상으로 가족주의의 적용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가족계획은 1961년 공식적 국가정책으로 도입되어 1995년 종료되기까지 약 35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정책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1962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분석의 범위로 하였다. 여기에는 가족계획의 도입과 전개가 경제개발계획

의 실행과정 속에서 추진되어 그 시기와의 관계성도 참고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가족계획의 종료가 1995년에 와서 이루어졌지만 제6차 계획인 1990년대에 들어서는 출산을 감소가 이미 인구대체 비율을 밑도는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정책으로서의 국민수용도 이전과 달리 낮아져 단지 계획으로서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계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960년대~1990년대 초까지의 시기를 본 연구의 범위에 두고자 한다. 또한 정책목표의 변화와 이를 위한 전개 활동을 살펴볼 때에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각 시기별 산아제한의 목표와 방향이 각각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참고한 것으로, 변화 시기는 경제개발계획 각 2개년인 10년 단위의 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가족계획의 자녀수 목표 계몽운동의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와 내용은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되는 전반적 내용이 포함되는데, 첫째, 가족계획정책의 목표와 변천을 위해서는 인구정책30년사, 가족계획정책 실행에 중심적으로 관여했던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30년사와 당시의 일정 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가족계획평가세미나 보고자료집 등을 살펴보면서 특히 자녀수 줄이기를 위한 미시적 정책목표 구현을 위해 활용된 가족계획 계몽표어자료, 자녀수 변동과 관련한 각종 관련 문헌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가족계획을 일선 현장에서 실행한 조직체의 활동방식을 위해 가족계획어머니회 활동 자료집과 가족계획요원의 교육교재자료집을 활용하였는데, 특히 이러한 자료는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드물게 남아있는 자료로서 당시의 활동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참고가 되었다. 셋째, 가족계획 촉진을 위한 사회정책영역의 변화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 이루어진 사회지원정책자료, 그리고 여성의 출산억제와 가족 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관련된 선행 문헌 자료와 예비군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서 자료, 가족법 관련 문헌과 자료 등도 활용되었다.

2) 분석틀

지금까지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가족주의의 명확한 실체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통해 사회문화적 특성과의 결합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계획과 관련되는 3가지 사회문화적 특성과 가족주의의 결합이라는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그것은 성차별적 문화 속에서의 가부장적 가족과 근대가족을 통해 형성되어온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이의 전제가 되는 성차별적 문화, 발전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로, 이들과 가족주의의 결합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가족주의의 결합이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는 특정한 가족 형

태가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족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특히 가족구조와 형식에 구속받는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규모와 형태이며 특정한 형태와 규모에서 벗어나는 가족은 소위 비정상이라는 낙인이 부여되며 사회 속에서 차별의 대상이 된다. 가족계획에서의 정상가족은 자녀수를 통해 특정된다. 소자녀와 부부로 이루어진 근대 핵가족은 경제발전을 위해 요구되었던 가장 정상적이고 적절한 가족 크기로 경제적으로도 풍부하며 문명화된 근대 가족의 상징으로 이미지화하여 만들어간 과정이었다. 즉, 특정한 자녀수를 제한해두고 이를 지키는 가족은 근대가족의 상징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가족은 비문명과 빈곤의 전통적 가족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규범으로 침투되도록 계몽하였다. 그러나 실재는 전통적 가족제도와 차별적인 사회문화 등의 인프라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 크기만을 줄이라는 요구는 다양한 모순적 상황과 문제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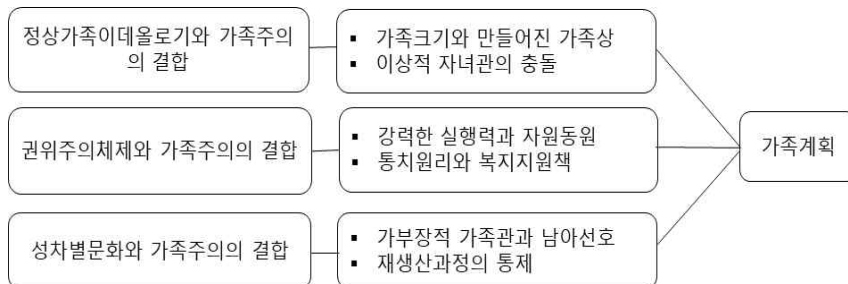
둘째, 발전주의적 권위주의체제와 가족주의의 결합이다.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의 주요배경 중 하나는 당시의 정책목표였던 경제발전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족계획이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고 전개된 당시에는 군사정부가 주도하던 권위주의 체제라는 특성이다. 이것은 국가재건과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회자원의 조절과 재배치 등이 강력한 개입을 통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알튀세의 지적을 빌리면 가족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하나로 지배체제와 사회질서를 재생산하는 기제로서 작용한다고 하였다(이영자, 1999:109). 한국 가족계획은 이러한 체제환경적 특성이, 가족주의가 국가 및 사회조직의 통치원리로서, 강력한 집행력과, 규제력을 동원하여 전개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이 정책의 대상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특징을 볼 수 있으며, 하나는 예비군집단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사업이 전개된 점이다. 예비군집단은 통제의 편이성, 강한 응집성과 위계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임신, 출산이라는 가장 사적인 문제에 대해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체제의 특성이 결합된 것임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장 취약한 계급 즉 농촌 지역 여성과 도시지역 빈민계급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이 우선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영국의 가족계획을 역사적으로 연구한 Banks and Banks(1964)는 19세기 영국의 가족계획은 초기에는 중산계급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이후 노동자계급에서 진행되었던 점을 들어 이는 노동자들이 중산계급의 문명화된 생활 문화를 따라 하고자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가족계획을 강제적 방식이 아닌 문화적 확산으로 분석한 바 있다(Banks and Banks, 1964:132-133).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는 가장 취약한 계급부터 역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성장 우선의 강한 통치력을 가진 체제특성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성차별적 문화와 가족주의의 결합이다. 이것은 강한 가부장적 가족의 특성으로 나타난

다. 남성가장 중심의 성역할 분리와 여성의 가족 및 남성에 대한 의존, 가사 및 양육의 가족노동 부담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아들을 통해 가문을 계승, 유지하고, 헌신적 모성을 중시하는 가족 질서에 순응하도록 억압되어 이 과정에서 남아 출산은 가문 전체의 과업이 된다. 가족계획에서 이러한 상황은 정책 주체에 있어 예상외의 장벽이 되어 가부장적 가족의 모습과 어떻게 갈등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또한, 성차별문화와 가족주의의 결합은 재생산과정의 결정권과 관련한 이슈들을 볼 수 있다. 가족계획은 여성의 임신, 출산 결정의 과정에 개입되는 것이나 그것이 온전히 재생산의 주체로서 여성에게 맡겨져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 볼 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의 출산율 감소가 높았던 배경 중 하나가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가운데(홍문식, 1986). 예비군의 정규 훈련시간에 남성불임시술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시간 면제 등의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가족계획을 실시하였으며, 이런 경우 배우자와의 의논은 생략된 채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였다. 당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여성 배우자의 인터뷰 자료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 “절대로 시술하지 않겠다고 하던 애 아빠가 갑자기 예비군 훈련가서 했더니...나중에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를 무시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했다 생각하니 밍기까지 하더라고요”(이미경, 1989:63). 즉 이것은 임신, 출산의 재생산과정이 남성의 독자적 결정에 의해 자주 실행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Banks and Banks(1964:131)가 지적한 바 있듯이, 인도나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국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계획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가족계획의 결정은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것은 일종의 특권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결정을 위해 아내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가족주의와 사회문화적 특성의 결합 관점으로 가족계획을 분석하기 위한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족계획의 가족주의 분석틀



4. 가족계획정책의 가족주의 분석

1) 가족계획정책 개요

한국의 가족계획은 세계 제2차 대전과 냉전 등의 국제적 상황 속에서 아시아국가들의 폭발적 인구증가와 빈곤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인구조절을 위한 출산억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1961년 공식적 국가정책으로 도입되어 1995년 폐지되기까지 약 35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이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개략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계획 시작의 시기로 1962년부터 1971년까지이다. 이때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1962-1966)과 제2차 계획(1967-1971)이 수립 실행되던 시기이다. 당시 정부는 가족계획을 국가재건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하여 1962년부터 재건국민운동본부가 가족계획사업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던 시기이다(보건사회연구원, 1991:77). 해당 관할 부처였던 보건사회부는 경제기획원과 함께 수차례 협의를 거쳐 1963년부터 가족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인구증가율을 1960년 2.9%였던 것을 1966년에 2.5%로, 그리고 2차 계획 종료시점인 1971년에는 2.0% 수준으로 저하할 것을 정책목표로 확정하였다(보건사회연구원, 1991:75). 이를 위해 1964년에는 각 행정상의 읍면 단위에 가족계획요원을 1인 배치하였고 1968년에는 가족계획어머니회를 창설하여 대면접촉방식을 활용하는 등, 가족계획사업을 홍보하고 계몽하는 것에 주를 이루었다.

둘째, 가족계획의 활성화기라고 볼 수 있는 1972년부터 1981년의 시기이다. 제3차, 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전개된 1970년대는 출산억제의 목표를 2자녀 낳기로 특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피임방식의 다양화,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성화 등의 적극적 전략이 실행되었다. 또한, 1974년에는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어 인공유산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출산억제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한 사회지원정책의 인센티브 등도 정비되어가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합계출산율은 1972년 4.12명이었다가 1975년 3.43명이며, 계획종료 시점에 가까워진 1980년에는 2.82명으로 낮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셋째, 가족계획의 전환기로 볼 수 있는 1982년부터 1991년의 시기이다. 1980년대에 정부는 제5차, 6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강력하면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여 인구증가억제대책을 공포하였다.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 전개에도 불구하고 1983년의 인구수는 4천만 명에 달하고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명의 수준이었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이 시기부터 출산하는 시점에 해당되면서 출산율은 계속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배경 속에서 새로운 인구증가억제정책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새마을사업을 통한 가족계획의 강화, 소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의 증대, 그리고 대도시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더욱 강력

해진 출산억제책이 포함되었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91:217;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83). 1980년대의 이러한 가족계획사업 전개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처음으로 1.0%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1988년의 합계출산율은 1.7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대체 수준을 밑도는 수준으로 진입하였다. 이하의 [표 1]은 가족계획의 주요한 내용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가족계획정책의 주요 내용 변천

주요내용	1962-1971	1972-1981	1982-1991
산아제한목표	(62년-66년):알맞은자녀낳기, (67-71년):세자녀갓기	(72-75):두자녀낳기 (76-81):두자녀낳기	한자녀낳기
인구증가율(%)	2.9(1960), 2.0(1971),	1.5(1976)	0.97(1988)
합계출산율(명)	4.5(1965), 4.3(1971)	3.1(1976), 2.82(1980)	1.7(1985)
민간참여조직	가족계획어머니회(1968)	새마을부녀회	
홍보전략	알맞은 수의 자녀 3자녀갓기(3.3.35)	두자녀낳기: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한자녀낳기: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관련 주요내용	새로운 피임방법 도입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1978년 가족법 일부 개정, 사회지원 시책	1989년 가족법 개정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1991;대한가족계획협회, 1991;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2) 가족계획정책의 가족주의 분석

(1)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가족주의의 결합

① 만들어진 가족: 가족크기와 정상가족이데올로기

가족계획사업의 두드러진 특징은 가족의 크기를 줄여 소자녀 가족이라는 핵가족 형태가 바람직한 가족상으로 만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한 접근은 국민계몽운동의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내용적으로는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가족계획은 “특정한 가족 크기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자녀 수 줄이기에 특정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진행되었는데, 소자녀+부모로 구성된 핵가족이 가장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가족이며 이것이 서구화 문명화된 근대가족이라는 이미지 만들기가 주로 이루어졌다.⁸⁾ 실제, 가족계획의 홍보 전략을 살펴보면 시기별 자녀수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적 감소과정을 볼 수 있는데, ‘알맞은 수의 자녀 갖기→3자녀갓기→2자녀낳기→1자녀낳기’의 순서와 내용이다(보건사회연구원, 1991:198-9). 가족계획 초기인 1962년부터 1966년의 기간에는 “알맞은 수의 자녀갓기”를 목표로 홍보되었다. 가족계획 초창기에는 지금까지의

8) Banks and Banks는 개발국가의 가족계획이 서구사회의 공업화 시기의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면서 그 방법은 매우 급진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족관이나 자녀관이 전통적 대가족중심의 다산다복의 관습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갑작스러운 자녀수 제한의 방식은 국민적 수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증점적으로 홍보되었다. 두 번째의 시기인 1966년-1971년에는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자녀갓기를 목표로 하였는데, 이때는 자녀의 수를 3명이라는 수치로 특정하여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이후 계속 확대되어 1971년-1975년의 시기에는 “2자녀 낳기”, 1980년대에는 “1자녀 낳기”로, 점차 산아제한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⁹⁾ 이하의 [표 2]는 자녀수를 감소시켜가는 방법으로 사용된 국민계몽을 위한 슬로건이며 그 내용의 변천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가족계획의 자녀 수 줄이기와 관련된 슬로건 변화

시기/내용	가족 크기 통제를 통한 정상가족만들기의 슬로건 전략	
1960년대 (1962-1971)	1) 1962-1965년: 소자녀관 만들기: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2) 1966-1971년:3자녀 낳기	-세살 터울 셋만 낳고 35세에 단산하자(3.3.35)
1970년대 (1972-1981)	1) 2자녀 낳기: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행복한 가정 알고 보니 가족계획
1980년대 (1982-1991)	1) 1자녀 낳기: 둘에서 하나로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 -축복속에 자녀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하나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외동딸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한 부모에 한 아이 이웃 간에 오누이 -늘어나는 하나 가정 이웃담장 낮아진다

자료: 필자정리

위 슬로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계획이 진행될수록 자녀 수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력한 내용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가족구조, 즉 가족형태의 특정화를 통해 정상가족의 규범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중요시 한 정책 측면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 당시의 대국민 홍보에는 알맞은 수의 자녀를 달성한 가정은 가정경제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며 모자보건 및 자녀교육에도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계몽하였다(보건사회연구원, 1991:199).¹⁰⁾ 예를 들어, 1980년대부터 새로운 인구증가억제대책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에

9) 이때 자녀의 수에 대한 개념을 ‘2명’으로 강조하였는데 여기에는 출산억제의 정책이 장래에는 1남1녀로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인구 성장을 억제하려는 것에 기초한 것이었다(보건사회연구원, 1991:202). 즉 보다 장래적인 인구조절까지 포함된 정책 방향이었던 것이다.

10) 그러나 농촌 지역의 가족계획의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경북대산업개발연구소보고, 1974)에 의하면당시 경북 지역의 안동에서는 핵가족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여성들에게서 가족계획 찬성비율이 71.4%로 나타나고 핵가족관심도가 높은 여성들은 가족계획 찬성비율이 47.2%에 그치는 오히려 적극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여성들이 핵가족에 대한 태도가 확고하게 내면화되지 못한 채 핵가족제도가 좋다고들

도 가족계획과 인구교육이 포함되어 초, 중등학생의 교과과정에 소자녀가족, 즉 가족의 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는 학령기부터 가족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이상적 가족규모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김홍주, 2002:65). 이 같은 과정은 가족의 규모, 형태 등에만 초점을 맞추어 가족 형태를 획일화하고 특정하여 이것이 기존의 전통과는 구별되는 서구적이며 발전적인 근대화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권오주 외(1991)에 의하면 Gordon(1982)은 출산통제에 대해 분석한 연구를 통해, 19-20세기에 걸쳐 출산통제에 관한 페미니스트의 입장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어 논쟁이 되었는데, 20세기 초의 출산통제를 옹호한 사회주의페미니스트의 견해를 지지한 그룹의 입장은 그것이 적어도 여성의 가정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여성의 이익을 위한 정치사회 활동의 참가에도 자유를 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권오주 외, 1991:67).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스스로 출산조절 운동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배경에는 여성들이 과도한 출산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더불어 가족 내 성역할 분리에 대한 개선을 원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 가족계획정책을 보면, 이러한 배경적 요구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게 인지하지 않으면서 가족의 규모만 줄이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있어 가족의 질적인 문제, 가족구성원의 평등한 관계와 역할 등에 관한 것보다는 외형적 모습, 소규모가족=정상가족의 확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다산다복의 전통적 자녀관과의 충돌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크기 줄이기, 정상가족상 만들기의 산아제한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해나가는 것은 어떠한 모순적 상황들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주의는 어떻게 활용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족계획사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상적 자녀수”에 대한 규범 만들기가 있었는데, 전통적인 다산다복(多産多福)의 다자녀 가족은 빈곤과 양육부담, 교육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등치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소자녀 가족은 경제적으로 유효하며 문명화된 서구적 이미지를 가진 가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이 전개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당시의 이상적 자녀 수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실제적 조사들이 이루어졌다. 아래의 [표 3]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인식의 변천을 나타낸 것이다.

하는 여론에 그냥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가족계획 찬성에 대한 태도가 거짓으로 나타난 것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권규식, 김태영 이영옥, 1974:55-56). 핵가족에 대한 홍보 계몽이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표 3] 이상 자녀수 및 평균 이상 자녀수의 변동추이: 1965-1988

(단위:%)

	1965	1971	1976	1982	1985	1988
1명이하	0.3	-	4.2	5.5	16.2	19.8
2명	4.1	6.0	39.8	54.6	69.6	66.0
3명	33.4	42.0	36.6	30.5	11.1	10.1
4명이상	59.0	52.0	19.4	9.4	2.4	3.9
평균 이상적 자녀수	3.9	3.7	2.8	2.5	2.0	2.0
합계출산율	4.6	4.3	3.1	2.5	1.7	1.6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1991:476; 홍문식, 1998:207에서 재정리

[표 3]에 의하면, 이상적 자녀 수가 4명 이상인 경우는 가족계획사업 초기인 1965-1971년 사이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그 이후는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명의 자녀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점차적으로 감소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가족계획사업과정에서 목표로 했던 3자녀갓기 사업의 시기였던 197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의 2자녀 낳기 사업은 1976년에는 효과가 있어 이상적인 자녀 수로서 2명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39.8%로 증가하였고, 이후 1980년대 초에는 54.6%, 그리고 1985년에는 69.6%로 증가를 계속하였다. 또한, 1명의 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한 비율은 1985년에 와서 16.2%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 가족계획의 가족규모가 1자녀에 목표를 둔 것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진 연구들도 나타났다는데, 예를 들어 고영복, 김대환(1972)은 가족계획사업이 출생수를 조절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성보건의 문제, 특히 한국이 의료보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계층이 많은 상황에서 가족계획이 모자보건을 고려하여 질적인 출산조절에 목적을 두어야 함을 지적하였다(고영복, 김대환, 1972:50).

또한, [표 3]에서도 보았듯이, 1자녀정책이 전개되던 시기에도 2자녀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평균적 이상 자녀수는 1985년부터 이후 1990년대 말까지 계속적으로 2명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 1자녀 정책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상적 자녀 수는 더이상 낮아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가족계획대상이었던 마을주민들의 경우 자녀수 줄이기, 특히 1자녀 가정에 대한 계몽에 반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이미경, 1989). Elisabeth Beck(1998)의 지적을 빌려 이를 살펴보면, 그녀는 가족계획의 피임실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가족계획은 현대인이라면 출산에 대한 책임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새로운 도덕적 기준처럼 되었으며, 이것은 여성의 자발성이 아닌 의식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것이며 가족계획에 따르지 않는 결정을 하는 여성의 태도는 비합리적인 행위로서 간주된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결정을 어렵게 하는 가족내의 모순적인 구조 등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박은주, 2008:95-96). 즉, 가족계획에 따른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죄가 되고 그것은 결국 여성 개인의 책임이 된다고 하는 모순적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가족계획의 전개에도 적용 가능하다. 가족계획사업에서 규정된 가족크기를 따르지 못하는 배경에는 정책으로부터 규범화된 소규모가족은 실제 생활과는 일치되지 못하는 전통적 규범이 그대로 잔존하여 마찰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었다. 즉, 제도상으로는 호주상속제 등 남녀차별적 가족법이 있고 실제 생활에도 아들 한명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가운데 가족계획사업은 딸, 아들 구별 없이 1자녀를 갖도록 하는 것은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¹¹⁾ 이것은 불평등한 가족 내 법, 제도적인 인프라는 개선하지 않고 가족 크기라는 외형적인 변화만을 요구하는 정책 운영이 가져온 의도하지 않은 모순의 노출이었던 것이다. 즉, 근대화된 경제적 가족의 이미지만을 인식시키는 것에 집중하여 실제적인 남녀평등과 같은 합리적 가족의 지향은 고려되지 않았던 과정이며 이것은 획일적 형태 중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드러남이라고 할 수 있다.

Banks and Banks(1964)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비로소 가족규모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출생수를 제한하는 인구정책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는 정책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가족규모가 소자녀 가족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조언한 것이다(Banks and Banks, 1964: viii). 이것은 곧 여성을 둘러싼 불합리한 사회적 구조나 성평등을 고려하는 정책이 가족규모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가족계획의 전개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

(2) 발전주의적 권위주의체제와 가족주의의 결합

일반적으로 사회자원의 동원과 이의 배치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수행하는 발전국가는 시장, 가족 등 사회적 영역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특징으로 한다는 측면(김홍주, 2002:52)에서 볼 때, 가족계획은 발전국가에서 보여주는 특성 중 하나이다. 그에 덧붙여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권위주의적인 국가체제 가운데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즉, 가족주의가 권위주의 체제와 결합 되었을 때 드러나는 실체는, 특히 가족계획사업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강력한 정책 집행력과 관련 조직에 대한 자원동원, 그리고 정책목표를 위한 통치원리의 적용이다. 그러나 이 요소들은 각각으로 분리된다기보

11) 가족계획협회 내에서도 자녀 수를 급속히 줄여가는 전개에 있어서 즉 돌남기운동이 시작될 때에도 내부에서는 찬반양론이 있었으며 한국의 전통적 사상과 함께 정부에서 자녀 수까지 못 박듯이 지정하는 것에 있어 과연 일반 국민들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스러워했다고 말하고 있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91:154).

다 서로 혼용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① 실행조직을 통한 가족주의 침투와 통제

먼저 권위주의체제에서 가족계획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었던 것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특정 정책의 실행을 위한 강력한 정책집행력과 그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의 동원으로 가족계획의 실행을 위해 사용된 이러한 방식은 주로 하향식 목표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소통방식, 정책수용이 비교적 용이한 상대적 취약집단을 우선 대상화하는 것, 그리고 실행조직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오영란, 2019). 이와 함께 가족주의의 결합 관점에서 주목할 것은 정책실현을 위한 실행체계의 조직화와 이를 통한 전개 방식이다. 여기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가족계획의 주요 실행체계인 가족계획어머니회에 관한 부분이다. 정책실현에 필요한 강력한 집행력을 위해서는 가족계획사업을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체가 필요하였으며, 특히 당사자로서 상호소통이 가능한 여성 조직체의 필요성인데 이의 대표적인 것이 가족계획어머니회이다. 이것은 1968년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창설한 여성 조직망으로, 가족계획어머니회(이하, 어머니회로 표기함)의 활동은 궁극적으로는 피임방법 등의 활용을 통해 가족계획을 널리 권장하는 것과 가족계획이 내밀한 가족 내 활동이어서 그 자체가 가진 폐쇄성을 완화하고 가족계획이라는 용어가 금기시되는 측면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87:10). 그러나 어머니회의 탄생은 가족계획의 피임방식과 맥을 같이하는데, 창설되었던 1968년은 정부가 권장하는 피임방법 중 경구피임약의 보급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였다. 경구피임약은 복용과 관련하여 복용일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상호독려하고 약품 보급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성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어머니회가 창설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어머니회는 전국단위의 조직과 실행력으로 마을단위 여성들의 가족계획을 지원하는 일선 조직체로서 가족계획사업 현장에서의 가장 미시적 전달망이며 대상자와 직접 대인접촉을 통해 정책실행을 이어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어머니회 활동은 '치밀한 정부계획에 의한 감시망'으로 평가될 만큼(예를 들면, 김홍주, 2002:67), 동원된 조직체로서의 성격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어머니회의 조직구성과 가족계획요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가족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의 결합이 사회자원의 조직적 동원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첫째, 어머니회의 경우, 조직의 초기 구성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점은 어머니회 회원과 회장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인가이다. 어머니회의 회원수는 12~15명 정도의 수준으로 회원자격에 대해 제한을 두었다. 그 배경에는 회원이 되면 선택되었다는 자부심이 부여되고 비회원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권위와 신분이 생기도록 하는 목적과 회원의 단결력 강화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회원자격을 보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문해력)으로 지역에서 덕망있는 자”로 하고, 회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씨족마을에서는 문 중에서 가장 높은 서열의 여성이 회장으로 당선되게 하는 등으로 어머니회 조직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조직이 되는 방안으로 활용되었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87:20). 이는 어머니회의 조직구성원은 가족계획어머니회 연구보고서에도 제시되어있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주민들 중심으로 제한해서’(대한가족계획협회, 1987:42) 구성하려 했으며 이것은 가족계획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으로 읽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어머니회 운영을 지원하는 일을 했던 가족계획요원을 위한 훈련교재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회 회장이 어떤 사람이 적절한가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연령은 30대 이상, 교육수준은 그 마을의 중류수준 이상, 자녀수가 적은 핵가족으로 부부관계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남편직업이 나쁜 평판을 듣는 사람이 아닌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자, 경제상태는 중류이상, 가족계획에 찬성하고 적극적이며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았다(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 1972:52).¹²⁾ 이러한 어머니회 조직만들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 마을에서의 오피니언리더가 되는 소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핵가족”이라는 가족이미지 강화, 그리고 그것이 마을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가족계획에 적극 지지함으로써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 이웃의 주변 인물을 통해 보여주는 것, 이를 통해 대중 모두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선망의 대상에 의해 가족계획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족계획요원에 대한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어머니회 운영과 조직, 활동지원 등을 전담했던 가족계획요원의 경우는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족계획요원은 마을 내 어머니회 조직부터 여러 인구학적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도록 교육되었다. 지역사회의 요원으로서 파악해야 할 것들의 목록에는 가족계획대상자, 대상자 교육수준과 종교, 생활 정도와 직업, 부부간의 자녀수의 결정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가 등을 파악하여 설득대상 정하기, 그리고 가정 내 주요한 문제에 대한 의논 대상이 되어주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과거 사용된 가족계획실천방법을 파악하여 실패 없는 새로운 방법들을 권유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12) 가족계획어머니회 연구에서는 실제 마을 회장들의 활동을 자세히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D시 A군 B마을의 C회장의 경우, 본인이 아들 5명 출산후 IUD로 단산하고 어머니회 활동을 하면서 마을의 공동작업장 등의 활동으로 수익을 높이기도 하였고 가족계획 보급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던 중 남성 정관시술을 권고하는 과정에 당사자가 질병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뒤부터는 여성 대상 피임보급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87년 당시 B마을 주민 132명 가운데 무자녀 7명, 1자녀 46명, 2자녀 59명 3자녀 20명으로 소자녀 가족이 현실적으로 규범화되었다고 평가되었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87:72)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졌다(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 1972:18-19). 여기서 가족계획요원은 실제 가족과 같은 역할부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계획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지도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행복한 가정=소자녀가족’의 실제 사례 보여주기, 다산으로 신체 상태가 허약한 여성들에게는 인공유산의 위험성을 통해 가족계획을 유도하고 빈곤한 대상자에게는 생활고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권유하며 이를 통해 풍요로운 생활과 문명의 혜택이 가능함을 설득, 그리고 가족계획은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권유하였다(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 1972:49-52).¹³⁾ 이와 같이, 가족계획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회운영 교육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들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어머니회는 실제 어느 집이 가족계획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등을 월례회의를 통해서도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서도 기능하여 이를 통해 이웃 집단의 압력이 작용하게 함으로써 가족계획은 집단의 규범이 되고 집단의 실천이 되도록 하였다.¹⁴⁾

셋째, 가족계획요원의 가족계획어머니회 지원 시 활용되는 의사소통방식을 통해 좀더 치밀한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실제, 어머니회나 가족계획요원과 같은 인적 자원의 조직망과 연결망은 마을내 가족계획대상 여성들의 상세한 인구학적 정보에 대해 공유하면서 목적에 맞는 설득 작업이 가능하도록 교육받았으며 이는 산정된 목표량과 실적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 예를 [그림 2]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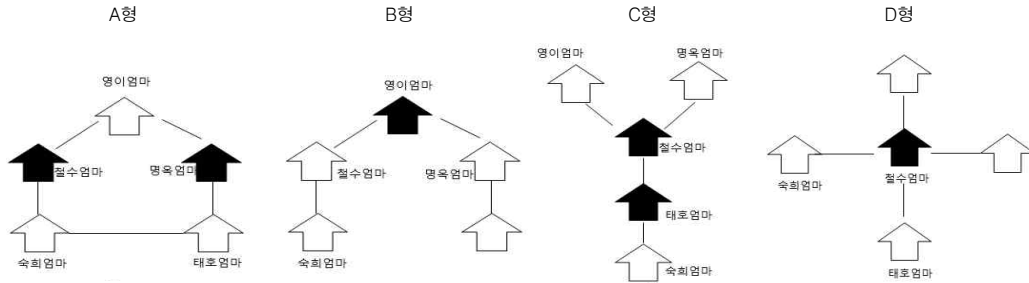
[그림 2]는 마을에서 가족계획요원이 어떻게 어머니회와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A형은 모든 가구가 상호소통이 가능한 구조이다. 이 경우 각각 가운데 있는 철수엄마와 태호엄마에게 연락하면 양쪽의 두 사람에게 각각 연락되어(예를 들어 태호엄마에게 연락하면 명옥엄마, 숙희엄마에게 연락됨, 철수엄마도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소통망이다. 그러나 B형의 경우 숙희엄마와 태호엄마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때는 반드시 두 사람에게 소통이 되는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C형, D형은 각각 가운데 있는 철수엄마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C형에서는 영이엄마와 명옥엄마는 철수엄마를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다. D형에서는 가운데의 철수엄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서로 소통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이때 철수엄마는 소통의 핵심인물이 된다. 가족계획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나 정기월례회 등 각 세대에게 연락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13) 또한, 가족계획이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하였는데 사회적으로 명망가들이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있다는 예시들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마을에서는 면장 부인이 IUD를 했다거나 00덕에서 피임을 했다거나 하는, 마을 주요인물들의 사례를 들어 말하도록 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가족계획에 참여하도록 하였다(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 1972:51-52).

14) 가족계획을 한 어머니들을 인터뷰했던 기록을 보면 원하는 자녀 수를 낳은 여성들이 한꺼번에 3-4명씩 가서 난관 수술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 ‘수술하러 갈 때 oo와 같이 갔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이미경, 1989:60).

같은 방식의 전달망을 참고로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가족계획요원의 마을내 의사소통 활용방법 예



자료: 인구 및 가족계획 연구소, 1972:31-35에서 정리

그러나 이러한 미세한 연락망이 파악되기 위해서는 마치 가족처럼 마을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평소의 행동반경의 동선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족계획을 위한 요원 교육이나 어머니회 등을 통해 마을사람들의 가족계획실천을 위한 일상생활에 침투되는 방식의 교육과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배경에는 당시의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위해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정책 도구로 하면서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규제중심의 하향전달방식, 조직과 계몽 교육의 자원 동원을 통한 강력한 실행력, 그리고 미세한 연결망과 구체적 정보의 공유라는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출산당사자와 어머니회 그리고 가족계획요원을 포함하여 마을전체가 하나의 가족과 같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국가통치원리로서의 가족주의: 가족계획과 사회지원책

가족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1981년 새로운 인구증가억제대책을 실행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사회지원대책이 실시되었다. 그 배경에는 1981년 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경제개발 외 사회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복지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구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구증가억제책이 요구되었으며(보건사회연구원, 1991:91), 1981.12.7일 새로운 인구증가억제대책이 발표되었다. 여기에 소자녀 가족을 위한 사회지원시책의 강화가 포함되었다. 아래에서는 복지지원책인 사회지원대책의 전개 과정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첫째, 규제적 지원방식의 접근으로 정책이 이루어졌다. 즉, 사회지원정책의 내용이 급여보다는 규제의 방식을 사용하여 국가재정의 직접적 투입을 필요로 하는 공급자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되도록 피하고 개인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가 제시한 일정 수준의 조건

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박광준, 2013:310). 국가가 직접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회적 주체들을 통해 제공하게 하거나, 또는 간접적 방식인 조세감면 등을 제공하여 급여를 대체하는 것까지 포함된다.¹⁵⁾

가족계획의 전개 과정에서 시행된 사회지원 대책에서도¹⁶⁾ 이와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규제와 보상을 동시에 행하는 규제주의적 방식을 택함으로써 자녀수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직접적 규제방식으로 1983년부터 공무원에게 제공되던 자녀학비보조금(교육수당)과 가족수당에 대해 그 지급대상을 2자녀까지로만 제한하는 조치이다. 둘째, 세제감면 방식의 규제이다. 1974년 재무부에서는 소득세법을 통해 과세의 감면대상으로서 인적공제를 3자녀까지로 제한하는 방침을 시행해왔는데 1970년대 중반부터 2자녀 낳기 운동이 진행되면서 1977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인적공제를 2자녀까지로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셋째, 우선권부여를 통한 규제방식이다. 1978년 이후 1980년대에 걸쳐 2자녀 출산 후 불임시술을 수용하는 가정이나 개인에게는 각종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그 대상영역을 보면 1978년에는 공공주택 입주시 우선적 입주권, 1982년 생업자금 용자 시 우선 용자대상자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영농자금이나 어촌자금을 용자받을 때에도 우선권부여를 적용하였다. 넷째, 제도 내용의 확대와 축소를 통해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먼저, 의료보험의 경우 1980년에 국공립병원에서 둘째 자녀를 분만하고 불임시술을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분만비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였고, 1982년 의료보험급여내용에 불임시술과 인공유산상을 포함시켰으며, 1983년에는 의료보험 분만급여의 대상을 2자녀 출산까지로 제한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유급출산휴가를 2자녀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였고 또한, 1982년부터는 불임시술을 수용한 영세민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하였는데, 2자녀 이하의 대상은 10만원, 3자녀 이상은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하였다. 다섯째, 다른 주체에 대한 규제를 행함으로써 보상이 주어지는 정책으로서는 1977년에는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기업체가 직원들의 가족계획 관련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일반 경상비처럼 손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통해 가족계획장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며, 민간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유사한 방식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A회사의 경우 직원 채용 시 3자녀 이상 출산을 하면 퇴사할 것을 계약서에 서약하도록 하는 방식이거나 대한가족계획협회의 경우는 직원에 대하여 3자녀 이상의 경우는 승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규채용에도

15) 예를 들어 1961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강제규정으로 법정퇴직금 제도를 만든 것이나 의료보험의 확대과정에서 개인과 기업부담을 증대시키는 방식, 그리고 노인부양에서의 세제지원으로 운용되는 것 등을 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6) 여기서 사용한 사회지원대책은 이하의 문헌을 참고한 것이다. 양재모(1985), 한국에서의 출산력보상 및 규제제도, 양재모(1986),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종합분석, 보건사회연구원(1991), 인구정책30년사, 대한가족계획협회(1991), 가협30년사

제한하는 등의 기준을 만들기도 하였다(양재모, 1985:50).

이상과 같은 사회지원대책의 과정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자보다는 간접적 감면이나 다른 사회 주체의 규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복지지원대책이 행하여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접적 규제의 경우는 공무원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관련하는 민간기업 등 비교적 규제를 수용하기 쉬운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복지지원책의 운영방식은 가족계획이 국가 정책의 운영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조건이 되는 것이며 국가가 목표로 하는 2 자녀가족 만들기가 통치원리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3) 성차별적 문화와 가족주의의 결합

① 가부장적 가족전통과 가족계획: 남아선호관습과의 충돌

자녀의 특정한 성선호(姓選好)에 대해, Arnold(1985)는 비서구 국가들의 성 선호는 개인들의 태도가 아닌 사회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는 성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¹⁷⁾ 남아선호가 일반적으로 높은 동아시아국가, 특히 한국에서¹⁸⁾ 아들이 있다는 것은 문중의 대를 이어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며, 제사의식을 주도하여 가문의 권위를 세우는 것(Arnold & Kuo, 1984:305), 그리고 노후부양은 아들에 의존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권위는 아들에게 부여되고 이를 통해 가부장적 가족과 부계중심 사회를 유지시켜 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¹⁹⁾ 이러한 사회 관습적 사고는 이른바 남아선호사상으로 명명될 만큼 깊숙이 일상생활 속에 자리하였으며, Arnold의 지적처럼, 남아선호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가족과 가문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 임신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정서적 압박이 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자신의 가족 내 지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아들은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된 상황에서 자녀수 통제 전략인 가족계획은 이러한 전통적 남아선호사상과 충돌되는 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즉 가족계획의 계몽은 1자녀 낳기, 또는 많어도 2 자녀까지의 자녀 수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자녀는 적게 낳으면서도 아들은 반드시

17) 성선호에 대한 연구가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한 연구는, 예를 들면, Coale & Banister (1994)는 중국의 출생성비, 특히 여아 사망율에 주목하여 분석한 것을 볼 수 있다.

18) 비서구 국가 26개국을 대상으로 성선호 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성용, 1996)에서 한국은 네팔과 함께 남아선호국가로 분류되었으며, 그 이전 성선호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27개국을 비교 분석한 Cleland, Verrall and Vassen(1983)의 연구에서는 강한 남아선호국가로 한국, 네팔, 파키스탄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아시아의 8개국을 대상으로 부모의 아들선호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한국은 대만과 함께 가장 아들선호가 강한 나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Arnold & Kuo, 1984:301-302).

19) 남아선호에 대한 동아시아국가 내에서의 차이도 존재한다. 한국은 아들의 필요성에 대해 제사와 가문의 계승이라는 요인을 높게 말하지만, 중국의 경우 아들의 존재는 노후부양이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회보장제도의 미비가 가져오는 배경 요인도 함께 작용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한국의 경우도 사회보장제도의 충실은 빠르지 않은 시기라고 볼 때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탐구의 과제이기도 하다.

시 1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습과 정면으로 충돌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남아선호와 가족계획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가족계획의 채택율이 낮아진다는 점이였다. 실제, 아들을 낳은 여성은 가족계획 채택율이 높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반대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농촌에서 1남무녀의 경우 가족계획 실시율이 8%, 2남의 경우 22%, 3남의 경우는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아만 있는 여성의 경우 무남5년까지도 가족계획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윤종주, 1971:82). 특히, 권규식 외(1974)의 조사에 의하면 남아선호도가 강한 지역에서 남아선호 점수가 높은 여성들은 그들의 이상적 자녀 수가 3.86명인 것에 비해 현존하는 자녀 수는 4.62명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크며, 이것은 남아선호도가 낮은 지역과 비교할 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남아선호의 정도가 출산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권규식, 김태영, 이영옥, 1974: 67-68). 또한, 이러한 상황은 도시지역에서도 그 격차는 약간 낮게 나타났지만 결과는 유사하였는데, 3남무녀의 경우 65%가 가족계획을 채택하는 것에 비해 3녀무남의 경우는 22%에 그치고 있었다(윤종주, 1971:82). 즉 여아가 몇 명인가는 무관하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산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경우가 다수 보였다(이성용, 1996; 권규식, 김태영, 이영옥, 1974). 이같은 조사를 통해 가족주의와 가부장제 그리고 정상가족신화가 교차하는 재생산의 장에서 여성들이 남아출산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부장제적 교섭’(澤田佳世, 2014:87)으로, 성차별 및 가부장제적 사회구조와 계획된 가족만들기에 대처하는 여성들의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성 선호에 따른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실행하거나 출산의 결과로서 출생성비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64년의 희망자녀수는 4.1명이지만 실제 합계출산율은 5.6명이거나(윤종주, 1967:21-22), 1965년의 이상적 자녀 수의 평균은 3.9명이지만 합계출산율은 4.6명(박충선, 1999) 등의 차이는 결국 출생 성비와 관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가족계획에서 추진하는 소자녀수는 남아선호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는 다른 방식으로 가족계획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자녀수를 제한하여 적게 낳으면서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태아 성감별이나 인공임신중절에 의존하여 제한하는 방식이다. 실제, 다수의 연구에서 아들을 낳기 위해 태아 성감별이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혹은 그렇게 했던 경험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공세권, 조애손, 김승국, 1992; 박충선, 1999). 이러한 현상들은 출산 자녀의 성비 구성이 출산 여부나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는 것을 말하여주고 있다. 조남훈(1988)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이미 아들을 두고 있는 경우에 임신중절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녀의 성비는 아들을 갖기 위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로 인해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조남훈, 1988:24).

아래[표 4]는 출산 자녀의 순서와 출생성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특히 인구억제대책의 강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 이후에는 성비 불균형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산아제한정책이 엄격해질수록 아들의 선호와 필요성도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 출산자녀 순서별 출생성비 변화

(단위: 명)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총 출생성비	109.5	112.4	105.3	109.4	116.6
첫째아이	110.2	120.0	106.0	106.0	108.6
둘째아이	109.3	109.8	106.5	107.8	117.1
셋째아이 이상	109.1	110.8	106.9	129.2	194.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박충선, 1999:215

이상과 같은 모순적 문제의 발생은 가족계획정책이 자녀수 통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와 관련된 사회관습이나 법, 제도 등의 사회 구조적 모순과 가족을 둘러싼 성불평등적 환경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즉, 가부장적 가족의 해체, 가족 내 구성원 간의 실질적 평등, 성역할 완화 등 성불평등적 가족관습과 가족제도에 대한 변화를 통해 행복한 가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소자녀 핵가족으로 구성된 가족형태를 강조하는 것으로만 가족상을 만들고자 했던 점에서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아선호와 가족계획과정에서 나타난 충돌적 문제에 대해 가족계획정책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는,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과 관련된다. 동 법의 제정에는 그동안의 가족계획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더욱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해왔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위법이었기 때문에 동 법의 제정을 통해 불임수술을 포함한 피임보급과 이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81).²⁰⁾ 당시의 법 제정 전후의 상황을 보면, 1966년 49세 이하의 기혼여성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사람은 약 13%, 1971년에서 26%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에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기두, 1980:9).

가족계획의 전개 과정에서 노출된 성차별적인 가족을 둘러싼 규범과 제도에 대한 그 대책은 실질적인 대책으로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여기서는 그 대책의 문제점을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과연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대응인가? 하는 것이다. 남아선호가 왜 발생했는가, 왜 아들을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용식, 윤홍섭, 임현희(1986)의 조사에서는

20)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개정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처벌조항 폐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51.3%),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19%)의 순서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박충선(1999)의 조사에서도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57.5%), 제사를 위해서, 노후부양을 위해서(13.8%)라는 응답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남아선호의 배경이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계승이나 노후생활 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와 깊게 연관되어있으며, 따라서 남아선호의 의식완화를 위해서는 가부장적 호주승계제도 개선과 사회보장대책의 마련 등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책은 오히려 자녀수 통제와 목표량 달성을 위한 기술적 측면을 수정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가족크기를 중시하는 가족주의가 여전히 바탕이 되고 있다.

둘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시기와 내용에 관한 것이다. 남아선호와 가족계획의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 배경이 가족 내 성차별적 관행이나 가족관련 법제도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가족법 개정은 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1989년이 되어서야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가족법 개정에 대한 정책의 시의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정책 의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응책의 시의성 측면에서 보면, 당시의 합계출산율은 1982년부터 2.5였다가 1985년에는 1.7까지 감소하여 인구대체 수준을 밑도는 상황이었으며 그 비율은 199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다. 이것은 가족계획이 목표로 한 출산율의 저하는 이미 도달하고 있어 가족계획에서 나타난 모순적 성차별 가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정책의 타이밍, 즉 시의성에서 늦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 의지의 측면에서 가족법 개정의 문제의식은 여성단체로부터 시작되어 오랜 시간의 법개정 운동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결과로, 정책 주체의 의지보다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개정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1977년 가족법의 일부 개정 이후 여성단체는 지속적으로 호주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가족법의 개정을 제안한 이후 1989년 개정되기까지 다양한 노력의 과정이 있었다(안경희, 2014).²¹⁾ 그러나 호주제도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존속한 채 개정됨으로서 절반의 개선이라는 평가도 있다(안경희, 2014:117). 즉, 가족계획을 실행했던 정책의 입장에서는 가족계획이 기존의 남아선호관습과 충돌하면서 출산율 저하의 걸림돌이라는 의도하지 못했던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대응책은 시기적 적절성을 놓친 부분과 그 내용적 충분성에 있어서도 여전히 과제를 남기게 된 것이다. 결국, 가족 내 질적 평등을 통한 가족 지향보다는 가족계획의 성과 달성에 치우친 과정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 1979년의 유신체제의 붕괴와 1981년의 제5공화국이 시작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인구증가억제대책과 함께 가족법에 대한 개선의 인식이 있었지만, 실제 1989년 개정되기까지는 여성들의 노력의 과정이었다. 즉, 서명운동, 국회의원 설득, 유림회와 찬반토론, 개정안의 국회 제출과 폐기의 과정이 7여 년 동안 진행된 뒤, 198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안경희, 2014).

② 가족계획의 피임방식과 여성의 통제

가족계획에서의 성차별적 문화와 가족주의의 결합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가족계획실천의 핵심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피임방식의 보급과 계몽 과정에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국의 가족계획이 1961년 정책으로서 도입된 이후 빠른 시간동안 가족계획실천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높은 피임실천율과 수용율이 있다. 실제, 가족계획사업은 정책도입 이후 만 5년 후인 1967년에 피임실천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1961년 사업시작 시점에 전체 가임여성의 5%만이 피임실천을 한다고 추정되던 비율이 1971년에는 25-44세 사이의 여성 가운데 피임실천율이 25%, 1988년에는 77.1%로 나타나 그 확산 속도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다(이해영, 김진균, 1972; 대한가족계획협회, 1991; 가족계획연구원, 1971).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가족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또한 여성에 대한 출산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족계획의 주요사업이라 할 수 있는 피임방식의 보급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던 점이다. 가족계획사업에서 피임방식은 피임 도구의 도입에 따라 시기별로 달리 이루어져 왔다[표 6].

[표 6] 피임방법에 따른 피임실천 변동:1962-1988

(단위:%)

년도	1966	1971	1973	1974	1976	1978	1979	1982	1985	1988
피임실천율	20	25	36	37	44.2	49	54.5	57.7	70.4	77.1
자궁내시술	9.3	7.0	7.9	8.0	10.5	9.5	9.6	6.7	7.4	6.7
경구피임약	0.5	6.8	8.0	9.0	7.8	6.6	7.2	5.4	4.3	2.8
난관절제술	-	1.0	-	2.0	4.1	10.9	14.5	23.0	31.6	37.2
콘돔	3.1	3.1	6.5	6.0	6.3	5.8	5.2	7.2	7.2	10.2
정관절제술	3.1	2.3	4.6	3.0	4.2	5.6	5.9	5.1	8.9	11.0
기타	5.2	4.2	9.0	9.0	9.0	10.4	12.1	10.3	11.0	9.2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1991:545; 조남훈, 1988:16에서 재정리

[표 6]에서 피임방식의 변화를 보면, 1960년대 초반에는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외 여성의 월경주기법 등이 사용되었으나 1964년 자궁내장치시술(IUD), 1968년 경구피임약이 도입되고, 특히 1976년부터 난관절제술이 도입되면서 가족계획의 피임방식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급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계획사업 초기에 해당하는 1960년대에는 IUD와 경구피임약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난관절제술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그 외의 IUD나 경구피임약은 점차 감소되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정관절제술이 점차 증가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갈수록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당시 1972년부터 계속 진행되어오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계몽과 시술이 활성화되었던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에는 피임실천율이 가장 높은 77.1%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난관절제술이 37.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정관절제술과 콘돔사용이 이전 비율보다 증가하고는 있지만, 경구피임약과 IUD를 합한 여성 대상의 피임방식이 여전히 높은 46.7%를 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실제 [기타방법]의 주요 내용이 월경주기 조절 등과 같은 여성 대상의 방식임을 고려하면 전체 56%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계획사업의 피임방법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2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피임을 포함한 임신 출산 과정의 산아조절은 여성의 책임으로 맡겨진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피임실패 또는 가족계획 실패의 경우 그 책임에 대한 비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권오주 외(1991)에서 살펴본 Berry Throne에 의하면 임신 출산은 여성의 모성이나 본능 그리고 전능한 어머니의 이미지와 결합 되어 이를 여성의 의무로 규정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피임방식은 곧 가족계획의 조절과 실행 또한 여성의 의무로 이해되어 근대화된 가족만들기는 여성의 의무이며, 그것이 잘 수행되지 않을 때의 비난과 책임도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여성들은 스스로의 몸을 대상으로 출산을 조절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거나, 또는 정책으로부터는 피임수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²²⁾ 이것은 가족주의가 성차별적 문화와 결합되었을 때 여성에 대한 가족구속은 강력해지며 스스로 재생산을 통한 가족구성의 부담을 지도록 하는 모습으로 자주 보여진다. 실제로는 피임시술의 용이성이나 시술후의 부작용의 감소 등을 생각해볼 때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시술이 한층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런가에 대한 대답을, 가족계획사업에서 피임시술을 직접 담당했던 원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박윤재, 2009)에서 찾아보면, '피임방법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콘돔이지만, 그건 잘 보급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60~70년대 당시의 한국의 보수적인 남성들이 그것을 사용하기를 싫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윤재, 2009:22). 이러한 가운데, 여성의 경우를, 실제 당시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했던 연구사례(이미경, 1989:65)를 빌려 살펴보면, 인구억제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1980년대 후반에 와서는 난관절제술은 다른 피임방법보다 사업 목표량이 높았으며,²³⁾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계획요원들이 다른 피임방법은 부작용

22) 정기도(1998)에서 살펴본 McLaren의 [피임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영국에서의 산아제한을 통한 가족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여성이었으며 이는 어느 성이 출산을 규제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었는데 이것은 낡고 오래된 관점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즉 이 낡고 오래된 관점은 여성이 피임을 맡아야 하며 가족계획은 여전히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당시 있었다는 것이다(정기도, 1998:335).

23) 1987년 피임방법 별 목표량 산정을 보면 불임시술이 30만7천5백 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자궁내장치(IUD)로 25만 명이였다. 불임시술은 그 가운데 여성시술은 21만4천여 명이며 남성시술은 9만3천여 명으로

이 많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난관절제술을 유도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가족계획은 가장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가부장적 가족 속에서 상대적으로 수동적 위치에 있던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재생산과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모성건강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출산결정권에 관한 것이다.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피임방식은 결과적으로 여성 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 초 영국에서의 피임은 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키기 위해 채택되었으며(정기도, 1998:337), 1979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모성건강이 강조되고 있다. 동 협약에서는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제16조 e조항)를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안전하고 믿을만한 피임수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피임수단과 그 사용법 등에 대한 접근보장과 가족계획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0:91). 즉, 임신, 출산 과정의 조절은 여성 스스로 자녀수와 터울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의 피임에 대해서도 안전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보면 가족계획은 피임에 대한 안전의 확인과 자녀의 터울 및 자녀수에 대한 여성의 자발적 결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피임의 부작용으로, 가족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임 도구 및 약품에 대한 신뢰가 낮아 망설여지는 경우(이용식, 윤홍섭, 임현희, 1986:261), 특히 사용율이 높은 IUD의 경우 그것을 계속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개인적 이유(12%)보다는 의학적 이유(72%)가 매우 높은 것(고영복, 김대환, 1972:54)은 이런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상에서, 임신, 출산의 재생산과정에서의 결정권은 적어도 여성에게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불평등한 가족 내 상황에서 산아제한이나 임신 조절을 위한 방안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남성의 협력이 가능한 적게 관여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여성의 몸을 통한 임신 출산 과정은 가족계획을 위해 헌신되어야 하는 책임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계획의 전개 과정에 있어 가족주의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고찰하

여성과 남성의 시술 목표가 69.7%:30.3%의 비율로 산정되어 주로 여성의 불임시술(난관절제술)에 의존하여 피임이 실시되었음을 볼 수 있다(이미경, 1989:64)

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가족주의와 한국의 특징적 사회문화와의 결합이라는 관점의 접근을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한국의 특성을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발전주의적 권위주의체제, 그리고 성차별적 문화의 3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가족주의의 결합은 가족계획에서 주요하게 여긴 가족형태를 자녀수의 제한이라는 방식을 통해 소자녀가족=근대가족=정상가족의 등식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정상가족은 개인만이 아닌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가족이며 이것이 집단의 규범이 되도록 한 것이다. 둘째, 권위주의체제와 가족주의의 결합은 강력한 집행력과 자원 동원을 바탕으로 실행조직과 마을이 가족계획을 위한 하나의 가족처럼 실천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회지원대책의 시행에서 자녀수가 규제와 지원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 되도록 하는 등 가족주의가 정책원리로서 활용되었다. 셋째, 성차별문화와 가족주의의 결합은 가부장적인 가족관과의 충돌과 피임방식의 실천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로서 나타났다. 전자는 남아선호관습과 가족계획의 충돌과정에서 불평등한 가족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었던 법제도의 개선은 뒤늦게 이루어지며 자녀수 제한에 집중하는 과정을 보였다. 또한, 후자는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방식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면서 방법적으로도 안전하게 사용하기 쉬운 방법보다는 불임시술이 강조되고 있는 것 등은 정상가족만들기를 위한 자기헌신을 요구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가족구속력은 보다 강화되어 가는 것이다. 또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의 3가지 특징적인 문화와 가족주의의 결합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3가지 특성과 가족주의의 결합에 의해 나타나는 모습은, 서론에서 제기한 한국의 가족계획 전개가 다른 아시아국가와 비교했을 때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던 것이 어떠한 요인과 추진동력에 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에 대한 동아시아의 비교적 관점에 대하여 그 필요성은 이미 언급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비교의 분석틀을 구축할 필요성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가족주의와 사회문화적 특성의 결합이라는 접근 관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피임방식이 높게 사용되는 것은 어떠한 젠더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중국의 경우는 정책채택 이후 대중에게 전개되기까지의 시간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 국민적 수용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정이 활용되었는가 등, 각 국가의 특성과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 차이들이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방식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내는가 혹은 유사하게 수렴되는가 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접근은 필요한 것이며 또한 이후의 과제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 가족계획연구원 (1971). 가족계획사업평가세미나보고서.
- 강이수 (1999). 근대한국 100년과 여성의 삶. 경제와 사회. *겨울(44)*. 116-145.
- 고영복, 김대환 (1972). 농촌에 있어서의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사회학회간행물*. 41-55.
- 공세권, 조애손, 김승국 (1992). 가족계획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인구학회지*. 5(2). 1-14.
- 국가인권위원회 (2010). CEDAW홍보안내.
- 권규식, 김태영, 이영옥 (1974). 한국농촌사회의 가족계획에 관한 연구. 경북대산업개발연구소 연구보고. 45-80.
- 권오주, 김선영, 노영주, 이승미, 이진숙(역) (1991).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가족. Berry Throne et. al(1982). *Rethinking the Family*. 서울: 한울아카데미.
- 권용혁 (2011). 한국 근대가족에 대한 철학적 성찰. *사회와 철학*. 22. 59-84.
- 권희정 (2015). 입양실천에서 나타난 정상가족담론과 미혼모자의 고아만들기. *페미니즘연구*. 15(1). 51-98.
- 김경일 (2012).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서울: 도서출판푸른역사.
- 김기두 (1980). 낙태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법학연구*. 20(2). 9-24.
- 김혜경, 정진성 (2001). 핵가족논의와 식민지적 근대성. *한국사회학*. 35(4). 213-244.
- 김홍주 (2002). 한국사회의 근대화기획과 가족정치: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5(1). 51-8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 비교연구보고서.
- 대한가족계획협회 (1987). 가족계획어머니회 연구.
_____ (1991). 가협30년사.
- 뤼이젠더 (2012). 동아시아복지체제의 발전과 도전. 조흥식(편)(2012).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서울: 이매진
- 박경숙 (2017). 서울과 나고야노인의 생애사와 가족변화: 근대가족의 탄생과 종언의 생애사적 자취. *아시아리뷰*. 6(2). 3-47.
- 박광명 (2017). 5.16군사정부의 가족계획정책 입안배경과 논리. *동국사학*. 62(0). 411-448.
- 박광준 (1995). 가족이데올로기와 가족정책. *여성연구논집*. 6. 101-120.
_____ (2013). *한국사회복지역사론*. 서울: 양서원
_____ (2018).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중국 일본과 어떻게 달랐다*. 서울: 도서출판문사철.
- 박성철 (1969). 한국가족계획실천율의 추이. *공중보건잡지*. 6(2). 281-292.
- 박은주(역) (2008). 가족이후에는 무엇이 오는가. Elisabeth Beck · Gemsheim(1998). *Was kommt nach der Familie?*. 서울: 새물결.
- 박운재 (2009). 원로산부인과 의사들이 기억하는 가족계획사업 *延世醫史學*. 12(2). 19-28.
- 박충선 (1999)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성비율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6(2). 211-228.
- 박통희 (2004). 가족주의개념의 분할과 경험적 검토. *가족과 문화*. 16(2). 93-125.

- 배은경 (2005). 가족계획사업과 여성의 몸. 사회와역사. 67(0). 260-299.
- 백진아 (2007). 한국기혼여성의 가족경험. 담론201. 10(3). 241-269.
- _____ (2009). 한국의 가족변화: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인식. 33(12). 204-224
- 보건사회연구원 (1991). 인구정책30년사.
- 손승영 (2006).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담론201. 9(2). 245-274.
- _____ (2011). 한국가족과 젠더. 집문당.
- 송재룡 (2002). 가족주의와 한국사회의 생활의 유형. 한국입문사회과학. 26(1). 1-6.
- 안경희 (2014). 가족법개정사와 여성운동. 이화젠더법학. 6(2). 73-128
- 양재모 (1985). 한국의 출생력보상과 규제제도. 인구문제논집. 6. 48-52.
- _____ (1986).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종합분석, 한국인구학회. 9(1). 1-13.
- 오영란 (2019). 한국가족계획정책의 도입과정 분석:정책확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6(3). 195-223.
- 윤정란 (2008). 국가 여성 종교: 1960-197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기독교여성. 여성과역사. 8(0). 59-91.
- 윤종주 (1967). 한국가족의 남아에 대한 선호도문제. 인구문제연구. 4. 19-29.
- _____ (1971). 한국의 남아선호도가 가족계획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대논문집. 1. 79-86.
- 이미경 (1989). 국가의 출산정책-가족계획정책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6(0). 49-78.
- 이선이 (2007). 전후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과 여성, 여성과역사. 7(0). 165-207.
- 이성용 (1996). 행위모형에 따른 26개국 비서구국가의 성선호의 유형. 한국인구학. 19(2). 19-45.
- 이승환 (2004). 한국가족주의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변화가능성. 유교사상연구. 20. 45-66.
- 이영자 (1999).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와 페미니즘. 현상과 인식. 23(3). 107-122.
- 이용식, 윤홍섭, 임현희 (1986). 가족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식구조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243-266.
- 이해영, 김진균 (1972). 한국가족계획사업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회학회간행물. 5-15.
- 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 (1972). 가족계획어머니회의 운영을 위한 가족계획요원교재.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한국사회의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가족과문화. 27(3). 1-38.
- 전미경(역) (2012). 근대가족, 길모퉁이를 돌아서다. 落合惠美子(2000). 近代家族の曲がり角. 서울:동국대학교출판부.
- 전효숙, 서홍관 (2003). 해방이후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와 과제. 의사학. 12(2). 129-143.
- 정기도(역) (1998). 피임의 역사. McLaren.A (1990). History of Contraception. 서울: 책세상.
- 정무권 (2002).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과 한국복지제도의 성격논쟁에 대하여. 김연명 (편)(2002).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서울: 인간과 복지.
- 조남훈 (1988). 출산조절정책의 현황과 전망. 한국인구학회지. 11(1). 14-31.
- 조은주 (2018). 가족과 통치. 서울: 창비.
- 최재석 (1982).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홍문식 (1986). 예비군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서.

- _____ (1998). 출산력억제정책의 영향과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인구학*. 21(2). 182-227.
- 통계청 (1996). *장래인구추계*.
- 落合恵美子編 (2013). *親密圏と公共圏の再編成*.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澤田佳世 (2014). 日本の出生率と沖縄の子産み. 小浜正子, 松岡悦子(編)(2014). *アジアの出産と家族計画*. 東京: 勉誠出版.
- 瀬地山角 (1996). *東アジアの家父長制*. 東京: 經草書房.
- 朴光駿 (2012). 韓國介護保險の財源構造と家族主義. 第17回社會經濟國際シンポジウム. 基調講演. 中國鄭州.
- _____ (2017). 東アジアの家族主義と新たな社会的リスク. 佛教大學綜合研究所共同研究成果報告論集. 55-74.
- Arnold, F. & Kuo, E. (1984). The Value of Daughters and sons: A Comparative Study of the Gender Preferences of Parent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5(2). 299-318.
- Arnold, F. (1985). Measuring the Effect of Sex Preference on Fertility, *Demography*. 22(2). 280-288.
- Banks, J.A. & Banks, O. (1964). *Feminism and Family Planning in Victorian England*. Schocken Books in New York.
- Campos, B., Fernando, O. & Guardino, C. (2016). Familism: A Cultural value with implications for romantic relationship quality in U.S. Latino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33(1). 81-100.
- Cleland, J., Verrall, J. & Vaessen, M. (1983). Preferences for the Sex of Children and Their Influence on Reproductive Behavior. *World Fertility Survey Comparative Studies summaries* 27.
- Coale A. J. & Banister, J. (1994). Five Decades of Missing Females in China. *Demography*. 31(3). 459-479.
- Daatland, S. & Herlofon, K. (2003). Lost solidarity or changed solidarity: a Comparative European view of normative family solidarity. *Ageing and society*. 23(5). 537-560.
- Mucchi-Faina, M. P. (2010). The Two Faces of Familism: A Cross-Cultural Research in India and Italy. *Psychological Studies, December*. 365-373.
- Sabogal, F. Marine, G., Otero-Sabogal, R., Marin, B. V. & Perez-Stable, E. J. (1987). Hispanic familism and acculturation : What chandes and what dosen't?.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9. 397-412.
- Valenzuela, A. & Dornbusch, S. M. (1994). Familism and social capital i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exican origin and Anglo adolescents. *Social science Quarterly*. 75. 18-36.

Abstract

How Familism was Used in the Family Planning in Korea

Young-ran O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familism was used in the development of family planning in Korea. Here are a few of problem consciousness. It is to clarify the practical meaning of what familism is and to clarify the process through a practical policy case called family planning. Familism is a term often used as the basis of social culture in East Asia, including Korea, but it is hard to say that the concreteness of the concept is clear.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familism was us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rough practical policy cases called family planning. With regard to the fact that Korea's family planning was achieved much faster than other Asian countries, there is a perception that it is necessary to answer the question, what was it that caused it happe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iming at the family planning policy in terms of the combination of familism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analyzed what it really looks like when familism are combined with the three characteristics such as normal family ideology, authoritarianism, and gender-discrimination culture. As a result, in terms of the combination with normal family mythology, through reducing the number of children, family planning focused on making small number of children's families and recognized them as a normal family image. The combination with authoritarian regimes used familism as the governing principle through strong executive and regulatory powers, and it was implemented as a precondition for welfare support and as a collective norm at the village level. In addition, the combination of gender-discrimination culture and familism shows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women's family restraint in the clash with traditional customs of a notion of preferring a son to a daughter, and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way of practice is represented by the control of the woman's body.

Keywords: family planning, familism, sociocultural characteristic, normal family ideology, birth control

◆ 2020. 1. 31. 접수 / 2020. 3. 2. 1차수정 / 2020. 3. 4. 게재확정

* Assistant Professor,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ohyr21@gntech.ac.kr)